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

■ 이종배의원·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0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배·박수현의원 등 29인
2. 발 의 일: 2025. 11. 25.
3. 회 부 일: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

회) 심사를 통해 기부금품 접수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한되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을 둠으로써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사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²⁾.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와 같이 개정안이 기본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인 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³⁾.

1)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연 2회 개최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법률 제11226호(2012. 1. 26.)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3)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u>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u>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

문 의 처

02)6788-5375

<부 칙>	<u>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u>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u>중전의 규정</u>에 따른다.	<u>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u> ② (개정안과 같음)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u>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u>」에 따른다.
--------------------	--	---

※참고자료: 기부금품 접수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자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재원)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